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385 호 2023. 2. 2.(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15회[하천점용 허가(협의)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16회[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18회[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 고시]..... 9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20회[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53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형도면 고시]·· 10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21회[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사항 고시]..... 11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34회[소하천점용 허가 공고]..... 12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58회[2023년도 전략작물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13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	--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 - 15호

하천점용 허가(협의)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3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환경위생과)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점용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 608-1번지	하천의 명칭	동천
점용 내용	식물 재식, 공작물의 설치	점용 면적	계속: 400㎡
점용 기간	계속 : 2023. 1. 31. ~ 2027. 12. 31.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 - 16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214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승인·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이 결정되었기에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계획 승인

가. 사업시행자

- 1) 사업의 명칭: 주택건설사업[울산시 북구 신천동 214번지 주상복합 신축공사]
- 2) 사업주체
 - 가) 성 명: 에스비그룹 주식회사 대표 이재홍
 -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달삼로 76, 6층(달동)
- 3) 사업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214번지 일원

나.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주체	에스비그룹 주식회사 대표 이재홍	
사업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214번지 일원	
대지면적	15,838.00㎡	
건축면적	6,208.000㎡	
연면적	111,595.3228㎡	
건폐율	39.20%	
용적률	464.43%	
동수(주/부)	주: 9개동, 부속: 35개동	
세대수	공동주택 : 488세대, 오피스텔 : 84호	
주택형별	(민간)분양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사업비	361,376,076천원	

2. 사업시행기간

- 2023. 03. 02. ~ 2026. 03. 31.

3.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사항

- 주택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사항을 포함합니다. (해당분만 포함)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의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단, 주택사업부지에 한함)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단, 주택사업부지에 한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제1항 및 「교통영향평가지침」 제29조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 변경신고
 - 「자연재해 대책법」 제4조에 따른 소규모재해영향평가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 검토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소방동의

4. 승인관련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청(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I.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99	신천7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북구 신천동 214번지 일원	-	증) 19,651.0	19,651.0	구역신설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99	신천7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A = 19,6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제19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등)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대상지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도시미관 증진과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II.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용도지역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9,651.0	-	19,651.0	10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18,446.0	-	18,446.0	93.9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205.0	-	1,205.0	6.1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1)방화지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위치	제한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농소지구	북구 신천·매곡동 일원	-	264,500 (18,446)	'00.3.10 울고33호	'00.3.10 울고33호

※ ()는 구역내 면적임.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도로

(가)도로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4	393	3,813	1	107	864	1	163	2,520	2	123	429
대로	1	100	275	-	-	-	-	-	-	1	100	275
중로	1	163	2,520	-	-	-	1	163	2,520	-	-	-
소로	2	130	1,018	1	107	864	-	-	-	1	23	154

※ 구역내 연장 및 면적임.

(나)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55	25	집산 도로	155	중2-583	대2-30	일반 도로	북구 신천동	'00.3.10 울고33호	'20.07.01 울고193호
변경	대로	3	55	25-28 (3)	집산 도로	155 (100)	중2-583	대2-30	일반 도로	북구 신천동	'00.3.10 울고33호	일부구간 폭원확장
신설	중로	2	629	15 (15)	집산 도로	163 (163)	중2-583	신천동 229-7	일반 도로			노선신설
기정	중로	3	474	11	국지 도로	76	신천동 229-7	신천동 229-2	일반 도로			'22.04.21 울고90호
변경	중로	3	474	11	국지 도로	76	중2-629	신천동 229-2	일반 도로			기점명변경
신설	소로	1	147	10 (8)	국지 도로	107 (107)	중2-269	소3-288	일반 도로			노선신설
신설	소로	3	288	6 (6)	국지 도로	23 (23)	소1-147	신천동 216-5	일반 도로			노선신설

※ ()는 구역 내 폭원 및 연장임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대로3-55	대로3-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 일부구간 폭원확장 (변경구간 : B=25m→28m, L=10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상복합단지 주변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일부구간 폭원확장
-	중로2-6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신설 (B=15m, L= 163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상복합단지 주변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노선신설
중로3-474	중로3-4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점명변경 (B=11m, L=76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상복합단지 주변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노선신설에 따른 기점명 변경
-	소로1-1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신설 (B=10m, L= 107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상복합단지 주변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노선신설
-	소로3-2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신설 (B=6m, L= 23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상복합단지 주변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노선신설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획지 번호	위 치	면적(m ²)	
합	계		15,838.0	-	-	15,838.0	
신설	1	1B	15,838.0	1	북구 신천동 214번지 일원	15,838.0	주상복합용지

■ 변경사유서

도면번호	가구 또는 획지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구역내 전 가구 및 획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 및 획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 관리를 위해 가구 및 획지 번호 부여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1	1B-1	용 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법」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단,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주택연면적 (주택부분에 대한 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 비율의 90%미만일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제조업소 및 총포판매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의한 업무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660%이하		
		높 이	• 23층이하(115m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분	도면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비 고
신설	1	대로3-55호선변 중로2-629호선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출입허용구간 지정(2개소) 	

Ⅲ.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없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4. 지구단위계획 총괄도
5.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6.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7.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

Ⅳ.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해당사항 없음

V.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2.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 북구청(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1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완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고시내역

실시계획 신고번호 (년월일)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	준공검사 확인증 발급일자	공사내용
	성 명	주 소				
제2021-9호 (2021.8.19.)	은풍건설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용암길 72	울산광역시 복구 어물동 1331-1번지 일원	1,860	2023.1.27.	당사어물항 어촌뉴딜300 사업 현장사무소 설치 및 TTP제작장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2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53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복구 어물동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53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3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53호선)사업

나. 명 칭 :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2.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복구 어물동 일원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도로개설 L=1,887m, B=6.0m, A=18,471㎡

4.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1010

5. 사업의 착수·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202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과 같음

7. 공공시설의 양도 또는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 관리청에 귀속

8.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 건설과(☎241-78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21호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고시내역

신고승인 년월일	승인 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	착공예정 일	준공예정 일	공사내용
		성 명	주 소					
' 23.21	제2023-1호	울산광역시 복구청 문화 체육과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복구 산하동 367-16번지 일원	2,500	2023. 2.4.	2023. 2.6.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운영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6. 11.>

소하천점용 허가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 134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상방천)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소하천명		상방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320번지
	면적	18㎡
	기간	계속: 2023. 1. 26. ~ 2026. 12. 31.
	목적 및 사유	산책로 조성에 따른 목교 설치

열람서류

1. 설계도서
2. 위치도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 - 158호

2023년도 전략작물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2023년도 전략작물 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신청기간 : 2023. 2. 15. ~ 3. 31.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ha 당 50 ~ 430만 원 지급
 - (동계) 기존 논활용 직불 대상 작물은 ha 당 50만 원 지급
 - (하계) 논콩과 가루쌀 재배시 ha 당 100만 원, 하계조사료는 430만 원 지급
 - (이모작) 동계 밀 또는 조사료 + 하계 논콩 또는 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 ha 당 1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250만 원 지급
4.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공동농업경영체(들녘경영체)(이하 '농업인 등')
5.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업에 이용되는 논(畓)
- ①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 * 종전의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②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 다만, 하천구역 농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농지전용 신고·허가를 거친 농지,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농지 등은 제외

나.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0.1ha(1천㎡)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락작물 작물을 재배하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①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전락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 관리하는 자
- ②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는 자
- ③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전락작물 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고, "승계대상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자

6. 지급대상 품목

가. (동계) 논(畓)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면적 및 고정시설면적 제외)로 6월 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을 할 수 있는 품목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 * 다만, 감자 등 동계작물이 아닌 경우 이동식 하우스를 설치하고 재배하는 등 6월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대상 품목에 포함
- 알팔파, 청예보리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의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 * 사료작물 : (목초) 알팔파, 오차드그라스, 이탈리아라이그라스, 토끼풀, 톨페스큐, 티모시 등 34종 (풋베기사료) 새싹보리, 수단그라스, 자운영, 청예갈대, 청예귀리, 청예밀, 청예보리, 청예벼, 청예수수, 청예옥수수, 청예유채, 청예피, 청예호밀

나. (하계) 논(畓)에서 재배하는 콩, 가루쌀 또는 하계조사료

- 가루쌀은 공공기관(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보급

하는 '바로미2'를 재배한 경우에 한함

○ 논콩은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콩에 해당하는 품목

* 논콩 : 황태, 청태, 흑태, 선비태, 아주까리콩, 서리태, 밤콩, 콩나물콩, 풋콩, 풋청태, 약콩, 갓끈콩, 양태, 장단콩, 울콩, 발아콩, 백태, 호랑이콩, 알록콩, 서목태, 강낭콩, 동부, 칼콩, 제비콩, 병아리콩, 렌틸콩 등

○ 하계조사료는 총체벼(청예벼), 옥수수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곡물 및 풋베기 사료작물로 하며, 직불금 신청 직전년도 대상농지에 벼를 재배하고, 알곡을 포함하여 조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다. (이모작 인정기준) 논(畓)에서 동계에는 밀이나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6월말 이전까지 수확한 이후 동일 필지에 하계 콩이나 가루쌀 재배한 경우

7.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 (필수) 직불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시)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영농증명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나. 제출방법 : 직불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

8. 신청시 유의사항

-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등에 한하고 있으므로 허위서류 제출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 예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콜센터(1644-8778)에 문의하시거나,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